

□ 정의 및 기본원칙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(지방 대학)를 졸업(예정)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-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판단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 인정기준**가. 지방 대학에 포함되는 대학**

- (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예시

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함
 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
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
 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가 아님
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나. 지방 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 대학 및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

다.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(1)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지방 대학 졸업 여부 검증

- 응시자가 제출한 졸업증명서를 통하여 지방대학교 졸업자 검증
- 응시자가 제출한 졸업증명서로 본교와 분교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교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(학교장 확인서 등)를 제출받아 검증